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C-RA, BLB, JEA, JEA-RA, JEA-RB, JEA-RC, JEA-RE, JFA-RA, JOA-RA
책임 사무실: Chief of Teaching, Learning, and Schools

노숙/홈리스 학생의 등록 Enrollment of Homeless Students

I. 목적

각 노숙/홈리스 아동과 청소년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공립 프리스쿨 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요건을 명시한 연방과 주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능할 때마다 이동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의 식별 및 학교등록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규정 및 관련 절차는 홈리스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에의 등록, 출석, 성공에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이 모든 학생에게 있는 동일한 도전적 주 학생 학업 성취 기준 충족에 필요한 교육과 기타 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방법의 기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정의

A. “아동(Child)”과 “청소년(youth)”은 공립학교 또는 Maryland 내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하며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프리킨더가든부터 12 학년
2. Head Start 또는 Even Start

3. 특수교육, 장애가 있는 신생아와 영아를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Child Find) 포함
 4. 기타 프로그램
- B. “노숙/홈리스 학생(Homeless student)”이란 학생의 임시 주거지가 Montgomery 카운티 지역 내의 위치 여부에 상관없이 거주 지역 여건 이외의 모든 조건이 MCPS 에서 다닐 자격이 있음에도 일정하게 지정된 적절한 저녁 시간대의 거주공간이 없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아동과 청소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집이 없어지거나 경제적 이유 또는 비슷한 이유로 다른 사람과 공동 거주
 - b) 대체 또는 적절한 대체 거주공간이 없어서 모텔, 호텔, 트레일러 공원 또는 캠핑장에 거주
 - c) 응급/비상시 쉼터 또는 전환 쉼터에 거주하는 경우¹
 - d) 병원에 방치 또는 유기된 경우
 2. 밤시간 주 거주지가 다음과 같은 아동과 청소년—
 - a) 차, 공원, 공공장소, 빈 건물, 버스 또는 전철역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간과 같은 수면시간때의 정기적 대체 거주지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 또는 개인적 장소.
 - b) 가족, 아동 또는 청소년이 거주하는 환경에 수도, 전기 또는 난방과 같은 기본 공공시설 중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환경; 해충이나 곰팡이에 감염되어 있는 환경; 작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이나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¹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위탁양육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은 노숙/홈리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위탁양육인 학생에 관한 정보는 Board Policy JEA, *Residency, Tuition, and Enrollment*; MCPS Regulation JEA-RB, *Enrollment of Students*; Regulation JEA-RE, *Tuition-based Enrollment*;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 를 봅시다.

환경; 또는 성인, 어린이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게 위험한 환경.

3. 위에 묘사한 상황 중 하나에 농업 이주 노동자인 부모/보호자와 거주하는 아동.
 4. *보호자가 없는 노숙/홈리스 청소년(unaccompanied homeless youth-미동반 홈리스 청소년)*은 부모/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이 없는 노숙자 학생입니다.
- C. “MCPS 노숙/홈리스 리에존(homeless liaison)” 은 노숙자/홈리스인 아동을 식별하고 등록하고 모든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노숙/홈리스 가족과 학교 교직원, 교육구 직원, 쉼터 담당자와 기타 복지 서비스 제공자와의 주 연락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 D. “학부모(Parent)” 또는 “후견인/보호자(guardian)”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1. 부모, 개인, 공공 복지 기관으로 노숙/홈리스인 학생의 법적 또는 적법한 물리적 양육권 보유한 사람;
 2. 법원의 명령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의 후견을 받은 자 또는 그 공공기관;
 3. 학생이 18 세 이상이고 학부모/보호자가 없는 경우 노숙자 학생 또는 청소년;
- E. “원래 다니던 학교(School of origin)”는 학생이 영구적인 집에 거주할 때 다니던 학교 또는 마지막으로 재학한 학교입니다.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School of origin)에서 최종 학년을 마친 경우, 이 학교는 학생의 지정된 수용 학교(designated receiving/feeder school)에 포함됩니다.

III. 행정절차

- A. 식별과 해당 여부 결정
1. MCPS 에 전학 온 학생의 경우

- a) 전학생의 부모/보호자가 MCPS Form 560-24, *전학생 정보(New Student Information)*에서 노숙/홈리스에 표시를 한 경우, 학생은 노숙/홈리스로 추정해야 합니다.
- b) 만약 학부모/보호자가 MCPS Form 560-24, *New Student Information* 에서 공동 거주(Shared Housing)에 표시한 경우, 학생의 생활환경이 노숙자 상태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2. MCPS 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MCPS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학생 학교에 학생이 노숙/홈리스라고 하거나 거주할 집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할 경우, 학생은 노숙/홈리스로 간주해야 합니다.

B. 최고의 이익 결정

학생이 홈리스로 확인되면 학생에게 제일 적절한 최고의 이익을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 회의의 일환으로 학교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 1. 최고의 이익을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 홈리스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닐지 또는 학생의 임시 거주 주소의 학교에 다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2. 홈리스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미동반 홈리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희망에 반하지 않는 한, 홈리스 학생을 출신 학교에 계속 재학하도록 하는 것이 홈리스 학생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정합니다.
- 3. 최고의 이익 결정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a) 만약 학생이 MCPS 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학부모/보호자가 등록을 원하는 학교; 또는
 - b) 학생이 MCPS 학생의 경우,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4. 최고의 이익 결정 회의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부모/보호자 또는 미동반 홈리스 청소년의 경우, MCPS 노숙자 연락 담당자 또는 MCPS Form 335-77, *Homeless Status* 를 작성한 양육자
 - b) 학교장/대리인;
 - c) 학생지도 담당관(Pupil personnel worker);
 - d) 적절한 학교와 교육구 사무실 직원 및
 - e) 적절한 경우, 노숙/홈리스 학생
5. 학생의 최고의 이익을 결정할 때, 학생의 성취, 교육, 건강, 안전에의 이동성의 영향과 관련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학생의 나이;
 - b) 학생의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
 - c)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의 학생의 경험;
 - d) 학생의 학업적 필요;
 - e) 학생의 정서적 필요;
 - f) 가족의 특별한 필요;
 - g) 교습의 연속성;
 - h) 현재 거주 형태인 기간
 - i) 가족의 미래 영구 거주지의 위치
 - j) 학사연도의 남은 기간
 - k) 통학 거리, 학생의 교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기타 학생 중심의 교통 관련 요소;

- l) 학생의 안전;
- m)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의 특수교육 여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의 외국어가 모국어인 학생을 위한 영어교습(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ESOL) 서비스 여부

6. 장애의 존재가 최고의 이익을 결정할 때 학교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a) 각 아동의 배정 결정은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을 잘 아는 사람, 평가 데이터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배치 옵션을 잘 아는 기타 사람들을 포함한 그룹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 b) 이동성이 높은 홈리스 아동은 종종 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한 학교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이익 평가는 홈리스 아동이 진단되지 않은 장애를 가질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일부 상황에서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으나, 학교는 홈리스 학생을 홈리스라는 이유로 일반 학교 환경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8. 부모/보호자와 별도로 거주하는 홈리스 학생에게는 다른 홈리스 학생과 동일한 학교 선택 옵션이 제공됩니다.
9. 최고의 이익 결정 회의의 일환으로 학부모/보호자는 교직원과 함께 Form 335-77, *Homeless Status* 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 배정에 관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MCPS Form 335-77 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배정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최선의 이익 결정 회의 결과 홈리스 학생이 학교 배정에 추천되어 학부모/보호자 또는 미동반 홈리스 청소년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지명인은 결정에 항소할 권리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 학부모/보호자 또는 동반자가 없는 미동반이자 홈리스 청소년에게

MCPS Form 335-77A, *학부모 편지(Parent Letter)*를 사용하여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항목 I 참조.

C. 등록 (Enrollment)

1. 홈리스 학생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학생이 학력,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예방접종 기록과 후견인 기록 등 일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학생을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 학교는 관련 학업 및 기타 기록을 얻기 위해 홈리스 학생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3. 홈리스 학생이 예방 접종 또는 예방 접종/의료 기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록 학교는 즉시 학부모/보호자를 MCPS 홈리스 연락 담당자에게 소개하여 필요한 예방 접종 또는 예방 접종/의료 기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동급 서비스

1. 각 홈리스 학생은 홈리스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학생이 교육 위원회에서 정한 도보거리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 학교까지의 교통편 서비스
 - b) Title I 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Head Start(Early Head Start 포함), 조기 개입 서비스 및 MCPS 에서 관리하는 기타 모든 유아원 프로그램
 - c) 방과전과 방과후 탁아서비스
 - d) 직업 및 준비 프로그램
 - e) 영재 및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f) 학교 영양 프로그램

2. 학교장/대리인은 교과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담당실 및 학교 지원 및 개선 담당실과 협의하여 홈리스 학생이 이전 학교에 다니는 동안 만족스럽게 완료한 전체 또는 부분 교과 과정에 대해 적절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의 예로는 이전 학교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모든 과정에 대한 학점 수여, 학교가 다른 학군 또는 주에 있더라도 해당 학교에서 학생의 교과 과정에 대해 학생의 이전 학교와 상담, 이전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완료한 학점, 제공된 학점 회복 과목을 포함한 비공식 또는 공식적 학생의 현재 평가가 포함됩니다.
3.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홈리스 학생은 학업 및 과외 활동에 접근하는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a) 학업 기회에는 메그넷 스쿨, 여름학교, 취업 준비 프로그램, 높은 수준으로의 배치 및 온라인 학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b) 접근의 장벽에는 누락된 지원 또는 등록 마감일, 벌금 또는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는 예방 접종 또는 기타 필수 건강 기록, 거주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가 포함됩니다; 기타 기록; 또는 학점 이전의 기록을 포함한 학업 기록

E. 기록(Records)

각 홈리스 학생에 대해 예방 접종 또는 의료 기록, 학업 기록, 출생증명서, 후견인 기록, 특별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록은 학생이 새 학교나 새 학군에 입학할 때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MCPS 규정 JOA-RA, *학생 기록(Student Records)*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홈리스 학생의 생활 상황에 관한 정보는 인명록 정보로 간주되지 않으며, 학생 기록에 포함된 다른 인명록이 아닌 정보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F. MCPS 노숙/홈리스 리에존

MCPS 노숙/홈리스 리에존은 다음을 담당합니다—

1. 홀리스 아동과 청소년을 식별하고 MCPS 에 등록하고 MCPS 에서 성공할 수 있는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2. 무료/할인 급식을 신청합니다.
3. 홀리스 아동 및 가족을 의료, 치과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남용 및 주택을 포함한 기타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주선합니다.
4. 학교 배치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5. 지역사회 홀리스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식별합니다.
6.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7.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합니다.
8. 홀리스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관련 기회를 알리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9. 학교,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가족 센터, 공공 도서관, 급식소를 포함하여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보호자가 자주 찾는 장소에 홀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의 교육적 권리에 관한 공시를 배포합니다.
10. 홀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 및 미동반 청소년에게 원래 다니던 학교까지의 교통편을 포함하여 모든 교통 서비스에 관해 완전히 알리고, 배정된 학교까지의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규정에 따라 등록문제를 조정합니다.
11. Title I 행정과 협력하여 McKinney-Vento 법에서 요구하는 확보자금에 따라 Title I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12. 홀리스 아동과 청소년이 해당될 수 있는 ESOL 서비스, Head Start(Early Head Start 포함) 및 Child Find 를 포함한 교육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와 커뮤니티와 학교 담당자와 조정하고 협력합니다.

13.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적 권리,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 식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및 절차, 그리고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의 특별한 필요에 대해 교직원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14. 아래 섹션 G 에 명시한 미동반 홈리스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G. 동반자가 없는 미동반 홈리스 청소년(Unaccompanied Homeless Youth)

미동반 홈리스 청소년은 학교 등록에 종종 장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에는 학교 출결석 정책, 학점 적립, 법적 후견인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변호하고 친권을 행사할 부모나 보호자가 없으면, 등록이 거부되고 장기간 학교에 소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반자가 없는 홈리스 청소년도 자신의 교육적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정보를 얻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때 졸업하지 못하거나 아예 졸업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감안할 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이 중요한 홈리스 청소년 그룹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1. 홈리스 연락 담당자는 동반자가 없는 노숙/홈리스 청소년의 학교 선택, 학교 등록 및 학점 전환을 지원합니다.
2. 등록담당자 및 기타 등록 직원은 등록 양식을 검토하여 어떤 학생이 부모나 보호자의 물리적 보호를 받지 않는지 확인을 도와야 합니다.
3. 홈리스 연락 담당자 및 기타 직원은 동반자가 없는 홈리스 청소년이 주택 지원, 건강 관리 및 기타 기본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4. IDEA 의 파트 B 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호자가 없는 홈리스 청소년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대리 부모가 임명될 때까지 비상 보호소, 임시 보호소, 자립 생활 프로그램 및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의 적절한 담당 직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해당 IDEA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 부모가 임명될 때까지 임시 대리 부모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5. 홈리스 청소년은 신청, 재정 지원, 지원 네트워크 부족과 같은 고등교육을 받고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a) 카운슬러는 홈리스 청소년이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학업을 향상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 b) 홈리스 연락 담당자는 가이드스 카운슬러 및 대학준비를 담당하는 기타 MCPS 교직원과 함께 모든 홈리스 고등학생이 대학준비, 대학선택, 지원절차, 재정지원 가능한 학교 지원 및 대학진학 가능성에 관한 정보와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1965 년 고등 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 section 480 에 따라, 독립 학생으로서 학생 자신의 상태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H. 자연 또는 인간이 만든 재해(인재)

1. 자연 재해 또는 인재로 인해 많은 가족이 한순간에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MCPS 홈리스 연락 담당자가 메릴랜드주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재해 또는 기타 재앙적인 사건으로 노숙자가 된 가족 및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MCPS 홈리스 코디네이터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재해가 발생하면 연락 담당자는 학교에서 많은 수의 집을 잃은 학생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식별 및 등록 절차를 지원할 추가 직원을 배치하여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연락 담당자는 피해 가족과 가족을 돕는 사람들에게 직접 홈리스 학생의 권리와 서비스를 홍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McKinney-Vento 권리에 관한 포스터나 안내를 전시 및 배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 등록의 이의제기

1. 학교 선택 또는 입학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 a) 홈리스 학생의 입학은 즉시 승인되고 문제/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등록을 원하는 학교(본래 학교 또는 노숙자 학생이 임시로 거주하는 주소의 학교)까지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b)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및 번역요청 권한을 포함한 학교 선택 또는 등록에 관한 학교의 결정에 관해 서면으로 설명이 제공됩니다. 학교가 결정에 도달한 방법에 대한 설명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학교가 제안 또는 거부한 결정의 설명
- 2) 제안되거나 거부된 사유
- 3) 학교가 고려한 기타 옵션에 관한 설명
- 4) 다른 옵션이 거부된 이유
- 5) 사실, 증인, 근거한 증거 및 출처를 포함하여 적격성 또는 최선의 이익 결정과 관련된 정보 및 학교의 결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에 대한 설명
- 6) 관련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일정
- 7) MCPS 홈리스 연락담당자 및 주정부 코디네이터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와 역할에 관한 간략한 설명

c) 미동반이자 홈리스 청소년의 경우, MCPS 홈리스 연락담당자는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기간에 학생의 등록이 즉시 이루어지고, 등록을 원하는 학교((원래 학교 또는 노숙 학생이 임시로 살고 있는 주소의 학교)까지 교통편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2. 등록, 학교 선택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 홈리스 학생 또는 미동반이자 홈리스 청소년의 부모/보호자로부터 서면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학교장은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b) 부모/보호자 또는 미동반 노숙 청소년이 해결에 만족하지 않거나 학교장이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부모/보호자 또는 미동반홈리스 청소년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c) 교육감은 수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d) 교육감이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부모/보호자 또는 미동반 홀리스 청소년이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보호자 또는 미동반 홀리스 청소년은 교육 조항, §4-205(c), *Annotated Code of Maryland* 및 *Board Policy BLB, Rules of Procedure in Appeals and Hearings* 에 따라 30 일 이내 서면으로 이 결정에 관한 항소를 교육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 e) 위원회는 항소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 f) 부모/보호자 또는 미동반 홀리스 청소년이 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보호자 또는 미동반 홀리스 청소년은 *COMAR 13A.01.05.02*.에 따라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Maryland* 주 교육위원회에 결정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 3. 항소를 포함하여 분쟁 해결 과정 동안 학생은 **MCPS** 에 계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MCPS** 에서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 4. 학생이 섹션 **III.A** 의 절차에 따라 홀리스로 식별되는 경우, 홀리스로 간주되지만 반대 증거가 발생하는 경우, 위에 설정된 절차에 따라 식별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 J. 홀리스 학생 식별 및 등록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문서 및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 1. MCPS Form 560-24, *신입생 정보(New Student Information)*
 - 2. MCPS Form 335-77, *Homeless Status*
 - 3. MCPS Form 335-77A, *Homeless Student School Choice Decision*
 - 4. MCPS Form 335-77B, *Homeless Student Transportation Action Request (HSTAR)*
 - 5. MCPS Form 560-20, *Elementary Student Withdrawal/ Clearance*

6. MCPS Form 560-21, *Secondary Student Withdrawal/ Clearance*
7. School-based Guidelines for Identifying and Enrolling Homeless Students

관련 자료:

Stewart B.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Subtitle B, amended by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P.L. 107-110), Title X, Part C, Subtitle B, Education for Homeless Children and Youth; Title I, Part A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as amended through P.L. 114-95, enacted December 10, 2015;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4-205(c);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2.06, 13A.05.02.04, 13A.05.02.13, and 13A.05.09

규정 변경사: 새 규정 2002년 8월 28일; 2003년 9월 16일 갱신; 2010년 5월 27일 갱신; 2021년 7월 8일 갱신.